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6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채현일 · 이상식
차지호 · 권칠승 · 김성희
김한규 · 고민정 · 최혁진
윤종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18조제1항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8조제1항 본문 중 “국회의원선거를”을 “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”로 한다.

제2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”을 “지역구국회의원,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”으로, “국회의원선거를”을 “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”로 한다.

제218조의19제3항 중 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”을 “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”으로 한다.

제218조의20제2항 중 “국회의원선거의”를 “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”로 한다.

제218조의24제2항 중 “또는 재선거는”을 “· 재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폐지·분할·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”으로 한다.

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“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”는 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”로, “거소투표자 또는”을 ““거소투표자 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218조제1항, 제218조의 4제1항, 제218조의19제3항, 제218조의20제2항, 제218조의24제2항 및 제218조의25제1항의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
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~ ⑩ (생략)

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
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
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
려는 선거권자(지역구국회의원
선거에서는 「주민등록법」 제
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
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
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·관리
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대통
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
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
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
전 60일까지(이하 이 장에서
“국외부재자 신고기간”이라 한
다) 서면·전자우편 또는 중앙
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
하여 관할 구·시·군의 장에
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
한다.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
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
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-----.

②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

-----지역구국회의원, 지
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
단체의 장선거에서는-----

-----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및
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--

-----.

④ (생략)

제218조의20(재외투표소의 투표
참관) ① (생략)

②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
(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
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
다)가, 국회의원선거의 경우

-----국회의원 · 지방의회의원 ·

「정치자금법」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
이 선거일 전 17일까지 재외
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
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
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
다.

③ ~ ⑥ (생략)

제218조의24(재외투표의 개표) ①
(생략)

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(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.

③ ~ ⑥ (생략)

제218조의25(재외투표의 효력) ①
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
제179조(같은 조 제3항 및 제4
항제7호·제10호는 제외한다)

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-----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18조의24(재외투표의 개표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재
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
치 · 폐지 · 분할 · 합병에 따른
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--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18조의25(재외투표의 효력) ①

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전투표 및 거소투표”는 “재외투표”로, “<u>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</u>”는 “<u>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</u>”로, “<u>거소투표자 또는</u> <u>선상투표자가</u>”는 “재외선거인등이”로, “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”는 “재외투표”로 본다. ② · ③ (생략)	-----. ----- --“<u>거소투표자 또는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